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일부개정법률안
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9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1.

발 의 자 : 송옥주·윤준병·임미애
전용기·이상식·황명선
이수진·강준현·한정애
문대림·서미화·오세희
전종덕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,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농지 전용, 경관 훼손 및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되어 있거나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 중 본래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.

특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주변의 유휴 비탈면과 녹지대, 하천구역 내 제방 및 경사면,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비교적 넓은 면적의 유휴공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보급에 활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.

현행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은 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으나, 도로·하천·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.

이에 도로 유휴공간, 하천부지의 제방 및 경사면,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 및 현황조사, 발전 가능량 조사, 안전성 및 사업성 분석,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.

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역주민의 출자·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이다.

아울러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와 면적, 소유·관리 주체, 발전 가능량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·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입지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.

주요내용

가. 도로 비탈면·녹지대 등 도로 유휴공간, 하천구역의 제방·비탈면,

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유휴공간을 정의함(안 제2조제6호 신설).

나. 현행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에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함(안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 신설).

다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도로 유휴공간, 하천부지 경사면 및 제방, 구거 및 그 밖의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4 신설).

라. 공공 유휴공간의 현황조사,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조사, 구조적 안전성 및 재해 위험성 조사, 사업성 분석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4제3항 신설).

마.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바. 공공 유휴공간 활용사업을 추진할 때 도로·하천·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, 구조적 안전성, 비탈면 안정성, 배수 기능, 홍수·산사태·낙석 등 재해 위험 및 교통·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(안 제27조의4제7항 신설).

사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지조사, 타당성 조사, 안전성 검토, 주민참여형 사업 및 에너지저장장치·전기차 충전시설 연계사업 등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5 신설).

아. 지역주민의 출자·투자 및 협동조합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도록 함(안 제27조의6 신설).

자. 공공 유희공간의 위치, 면적, 소유·관리 주체,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등을 조사·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7 신설).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“공공 유희공간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또는 시설 중 본래의 행정목적 또는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.

가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, 녹지대, 방음벽, 옹벽 및 그 밖에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희공간
나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, 비탈면 및 그 밖에 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유희공간

다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및 그 주변의 유희공간

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용지의 유희공간

제27조제1항에 제6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사업

6의2.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사업
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
부개정법률에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
한다.

제27조의4(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) ① 기후에너
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
용을 위하여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
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공 유휴공간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한다.

1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의 유휴 비탈면, 녹지대, 방음벽, 옹벽 및
그 밖의 도로 유휴공간
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구역 중 하천의 기능 및 관리에 지장이
없는 제방,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
3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및 그 주변
의 유휴공간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
공용지 중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유
휴공간
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또는 시설 중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유희공간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유희공간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공공 유희공간의 발굴 및 현황조사

2.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조사

3. 구조적 안전성 및 재해 위험성 조사

4.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

5. 공공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범사업

6. 공공 유희공간과 에너지저장장치, 전기차 충전시설 및 분산에너지 시설 등을 연계한 사업

7. 그 밖에 공공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

야 한다.

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,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공 유휴공간의 본래 기능 및 공공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도로, 하천,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해당 시설의 본래 기능에 미치는 영향
2. 구조물 및 시설의 안전성
3. 비탈면의 안정성 및 배수 기능
4. 홍수, 산사태, 낙석, 침수 및 화재 등 재해 발생 가능성
5. 교통안전 및 주민 안전
6. 자연환경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
7.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의5(공공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의4에 따른 공공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

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
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공 유휴공간의 발굴 및 입지조사
2.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
3. 구조적 안전성 및 재해 위험성 검토
4.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사업성 분석
5.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
6.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에너지 신산업과의 연계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
1. 산림 또는 농지의 추가적인 전용이나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업
2. 기존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
3. 지역주민이 출자·투자 또는 협동조합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
사업
4.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
5. 지역 내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연계하는 분산에너지 사업
6.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
업

제27조의6(공공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) ① 국가
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의4에 따른 공공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

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공 유휴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출자 또는 투자 참여
2.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
3.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
4.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

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및 수익환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의7(공공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정보관리체계 구축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 유휴공간의 위치, 면적, 소유·관리주체,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·관리하는 체계(이하 “정보관리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

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⑤ 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 및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 유희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공 유희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사업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공공 유희공간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외에는 「도로법」, 「하천법」, 「농어촌정비법」,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“ <u>공공 유희공간</u> 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「 <u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</u> 」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또는 시설 중 본래의 행정 목적 또는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을 말한다. 가. 「 <u>도로법</u> 」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, 녹지대, 방음벽, 옹벽 및 그 밖에 도로의 본래 기능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유희공간 나. 「 <u>하천법</u> 」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, 비탈면 및

제27조(보급사업)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신·재생에너지 의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·③ (생 략)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 법 일부개정법률	<u>그 밖에 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유희 공간</u> <u>다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및 그 주변의 유희공간</u> <u>라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용 지의 유희공간</u> 제27조(보급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사업</u> <u>6의2. 공공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보급사업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1462호 신에너지 및 재 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 법 일부개정법률
---	--

<신 설>

제27조의4(공공 유희공간을 활용

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) ①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
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국
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
공공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
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
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
이 되는 공공 유희공간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공간으로 한다.

1. 「도로법」에 따른 도로의
유희 비탈면, 녹지대, 방음벽,
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희공
간

2. 「하천법」에 따른 하천구역
중 하천의 기능 및 관리에 지
장이 없는 제방, 비탈면 및
그 밖의 유희공간

3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
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및
그 주변의 유희공간
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
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
설 및 공공용지 중 재생에너지

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유희공간

5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또는 시설 중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유희공간
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유희공간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공공 유희공간의 발굴 및 현황조사

2.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조사

3. 구조적 안전성 및 재해 위험성 조사

4.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경제성 및 사업성 분석

5. 공공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시범사업

6. 공공 유희공간과 에너지저장

장치, 전기차 충전시설 및 분
산에너지 시설 등을 연계한
사업

7. 그 밖에 공공 유희공간을 활
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하
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
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
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
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
관의 장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
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
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
다.

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
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
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
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
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
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
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재
생에너지 발전사업자, 지역주민
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
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

다.

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공 유희공간의 본래 기능 및 공공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도로, 하천,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해당 시설의 본래 기능에 미치는 영향
2. 구조물 및 시설의 안전성
3. 비탈면의 안정성 및 배수 기능
4. 홍수, 산사태, 낙석, 침수 및 화재 등 재해 발생 가능성
5. 교통안전 및 주민 안전
6. 자연환경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
7. 시설의 유지·관리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27조의5(공공 유희공간 활용
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제27조의4에 따른 공공 유희공
간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사업
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
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·재정
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공 유희공간의 발굴 및 입
지조사

2.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
위한 타당성 조사

3. 구조적 안전성 및 재해 위험
성 검토

4.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사업
성 분석

5.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
의 발굴 및 지원

6.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차
충전시설 등 에너지 신산업과
의 연계

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사항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
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
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<신 설>

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
1. 산림 또는 농지의 추가적인 전용이나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업

2. 기존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

3. 지역주민이 출자·투자 또는 협동조합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

4.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

5. 지역 내 에너지 생산 및 소비를 연계하는 분산에너지 사업

6. 그 밖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

제27조의6(공공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참여)

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의4에 따른 공공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공공 유휴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주

<신 설>

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출자 또는 투자 참여

2.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

3.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

4.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
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형 사업

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및 수익환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의7(공공 유휴공간 활용 재생에너지 정보관리체계 구축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

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 유희공간의 위치, 면적, 소유·관리 주체,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량 및 입지 적합성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·관리하는 체계(이하 “정보관리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구축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⑤ 정보관리체계의 구축·운영 및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